2019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19년 6월 20일 (목) 14:00~16:3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항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올 한해 사단법인 시민과 공동으로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8회의 연속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7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1차 포럼,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흐름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공동으로 실천할 과제에 대하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9일에는 **2차 포럼을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 개 활성화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인 〈서울시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을 주요 발제로 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 실천과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 포럼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시민사회 지형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5월 1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제영역, 조직형태, 활동방식 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1) 시민사회의 주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진단)와 2)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과제) 토론하였습니다.

2019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노동,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공익활동가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인정의 방식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보상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때,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2019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좌장 : 김소연 / 시민사회 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대표

◆ 발제

○ 기조발제 : 염형철 / 공익조합 동행 이사장

○ 주 발제: 안현찬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토론

○ 토론1 : 김의욱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토론2 : 김현아 / LAB2050 연구원

○ 토론3 :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 세부 일정

	I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좌장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 실무자				
14:05~14:10	인사말	김소연 / 시민사회 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대표				
14 10 14 20	əl 코 Hləll	염형철 / 공익조합 동행 이사장				
14:10~14:30	기조발제	공익활동가들이 인정받는다는 것				
14.00 15.00	주 발제	안현찬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14:30~15:00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15.00 15.15	토론1	김의욱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5:00~15:15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 보상이란?				
15 15 15 00	F 30	김현아 / LAB2050 연구원				
15:15~15:30	토론2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15.00 15.45	F 30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15:30~15:45	토론3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정책 방향				
15:45~16:30		질의응답 / 플로어 토론				

목 차

기조발제	. 공익활동가들이 인정받는다는 것 염형철 // 공익조합 동행 이사장	1
주 발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안현찬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7
토론1. 人	ŀ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 보상이란? 김의욱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29
토론2. 공	용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김현아 // LAB2050 연구원	33
토론3. 단	난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정책 방향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장	39

기조발제

공익활동가들이 인정받는다는 것

역형철 | 공익조합 동행 이사장

발표문 작성을 시작하며 생각이 많았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처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평시에 '공익 활동의 범위', '공익활동의 가치 평가', '사회적 인정의 내용' 등을 연구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 차례 포럼을 하며 충실히 쌓아 온 내용에 제가 무엇을 덧붙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요청받은 주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고, '공익활동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조발표가 아니라 토론이 된 셈입니다.

1. 사회운동은 인정되고 보상될 수 있는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개념의 정의, 공익활동가들이 바라는 가치인정의 방식,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확립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생각을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 주제들을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계 량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바람직한가에 대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포럼 자료의 내용처럼, 한국 사회운동의 성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2차 포럼 발표문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가 보여주듯 민주주 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시민사회는 큰 기여를 해왔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되지 않았던 시절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며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의 도입, 고위공무원 재산등록, 기초생활보장법, 부패방지법, 정치관계법 등과 같은 개 혁 이슈를 성공시키며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 정적인 공헌을 했다. 동시에 여성, 환경, 문화, 평화, 국제협력 분야의 이슈들을 사 회 의제화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최근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혁신, 공유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의 부문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시민사회는 정부감시와 시장견제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만드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성과가 컸다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사회적 인정으로 연결되어 야 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그것을 사회운동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대 운동의 중심이 '분배 투쟁'을 넘어 '인정 투쟁'에 있다고 하지만, '인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맥락상 어색하다고 봅니다. '인정'은 내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해야 완성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민사회 친화적인 개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은 '자율성'과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특성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언론들이 '촛불세력이 문정부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떠오르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

또한 사회운동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사회의 개혁을 촉진하려는 활동이기에 대체로 다수 대중의 활동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수자 운동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익활동', '보편적 활동'으로 동일시할 경우,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에 부합토록 설명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근본적 특성인 진보와 자율을 순치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이라는 프레임이 사회운동을 보수화하거나 활동을 제도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상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의 '상품거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품이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거래가 있어야 하고,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민사회의 활동과 성과는 이렇게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인정과 보상을 강조하다보면, 현실에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에 매달리게 되고, 시민사회 활동을 정부의 보조 활동으로 폄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활동을 경제활동으로만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2. 공익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인정이란?

지난 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와 '상근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과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활동가 급여·복지 향상(1순위 43.4%, 3순위 총합 91%), 비영리민단단체지원법 개선(89.9%), 단체활동 공간 마련 (85.3%), 활동가 후속세대 양성(85%) 등' '적절한경제적보상(74.6%), 활동의 전문성 및 경력인정,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 이에 대해 발표자는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공적 활동에 대해 무임금 봉사나 헌신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대한 공적 지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에서는 활동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들의 활동 목적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질문처럼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가들의 답변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저는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은 활동가 스스로와 단체들이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자율의지에 의해 시작한 활동을, 정부나 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한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듯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의뢰한 노동이 아닌 것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혜적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자립과 시민운동가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요청하는 지원 내용을 정리한 자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순서 대로 정리하면 '활동가로서의 성취감(정신적 조건)', '최소한의 안전망(물질적조건)', '자기 성장(교육)'입니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운동적 명분 (사회적 수요)', '내부 재생산의 안정성', '혁신(변화 또는 수용력)'으로 비슷했습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또는 3가지(운동, 재정, 교육)로 대별되는 바가 지금 사회운동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 토론 결과, 관심과 논의의 최종심급에서는 자기 운동이 사회적으로 평가 받고 수용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망이나 교육에 대한 요구들조차 부차적이었습니다.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사회운동의 전통이 활동가들의 인식을 왜곡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물질적 지원', 혹은 '교육의 제공'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운동적 명분'을 세우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운동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있던 없던) 운동의 대의를 논하는 체계를 앞에 세워야 하고, 이어서 (환호 받지 못하는) 지원 체계를 뒤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활동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정은 '운동적 성과'라고 봅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사회운동에 대한 존중이 활동가들이 바라는 인정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의 전망과 진로, 비전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지원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운동이 어디로 가는지, 공익활동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세우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것입니다.

3.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하다거나, 개인들의 선의와 시민들의 충동적인 지원에만 의존토록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혹은 공익활동의 존재 방식에 대해 고려하면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운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행정이나 기업들이 절대 해낼 수 없는, 흔히 이루어 놓을 수 없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일(3차 포럼 발표문)'에 대해 사회적으로 평가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분야의 대부분은 각자 혹은 각 단체의 몫이겠지만, 사회운동 혹은 공익활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각각의 노력들에 권위를 실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국 각자의 노력이 서로에게 지원이 되는 구조).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전망이 쉽게 찾아질 수 없을 터인데, 폭넓은 시야와 연대를 가능케 하는 협력과 분위기라도 전개해 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시민사회의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 내는 담론의 장으로서 한국 사회포럼을 활성화하거나, 활동가들의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 등이 강 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촛불항쟁 시의 광화문 광장이나 90-00년대 느티나무 카페 처럼 시민사회가 교류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공간을 구축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합 니다. 소속 단체들 사이의 공통점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운영함으 로써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정체성과 공통성을 형성해 낸 사례를 참조했으면 합니 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자격이 별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가 공익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는 상징,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체계의 힘을 활용할 필요 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내부의 힘으로 기반을 닦고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역행을 막기 위해 대못을 박아 놓겠다'던 주장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지 못한 지원 방안이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고, 시민사회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될 수도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지원망을 구축하고, 또한 시민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촘촘하게 공익활동가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다. 특히 사회적 자산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시민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몇 개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이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모사업이나 단순 지원 방식이아니라 권한부여, 인적자원강화, 시민자산화 등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1차 포럼 발표자료)"는 주장은 매우 적절합니다. 나아가 참여소득제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등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단기적으로는, '예술가 활동비 지원 사업'처럼 공익활동가로서의 활동 결과를 입증하며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 궁극적으로시민사회와 공동체 운동 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각광받고 지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방법이나 노력해야할 내용은 1-3차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이번 4차 포럼의 본 발표와 토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 등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Memo

주 발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안현찬 | 서울연구원

1. 요약문

※ 이 발제는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와 촉진방안」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연구보고서 출판 작업 중이어서 원문 대신 발표자료 및 발표자료를 해설하는 요약문으로 발제문을 대신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자립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먼저 자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당사자주의), 부족분에 대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보충성의 원칙) 주민 주도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9,759건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약 30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누적 참여자 수는 2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자립 지원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연구자와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공모방식의 보조금 제공은 주민의 행정의존도를 높이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활동과 모임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합니 다. 반면에 활동가와 주민은 사업 참여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현금 자부담(보조 금의 10% 이상) 외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 재능, 현물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큽니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민자원은 곧 마을공동체의 역량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가진 시간, 재능, 현물 등의 자원을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조직, 활용, 축적하는 마을공동체는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 지원 원칙은 이러한 주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

¹⁾ 안중훈,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DB 기초현황 분석: 2016~2017년을 중심으로", 서울시 마을공 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 공유회, 2018.12.13.

다. 공동체 단체가 약정한 다양한 주민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총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까지 주민자원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서 실제 사업에 어떤 주민자원이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측정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민자원을, 어떻게 측정하고, 가치를 얼마나 책정하며, 어떻게 촉진할지도 관계자 집단마다 의견 차이가 큽니다. 제 연구는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자원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실제 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을 공동체사업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자원의 인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1)인정할 수 있는 주민자원의 유형과 요건, 2)주민자원별 적정한 가치환산 금액입니다.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의 유형은 정책 관계자 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서울시 사업결과 분석을 거쳐 자원활동(시간), 재능, 현물 등 3개 대분류에 따른 14개 세분류로 정했습니다(이후 대분류에 현금 추가). 공익활동과 가장 밀접한 자원활동은 사업 참여자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한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 공간운영, 마을강좌(필수교육 이수)로 분류했습니다. 참고로, 정규노동에 준하는 활동은 정당한 인건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주민자원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능은 대가를 받지 않거나 그 이상으로 제공된 강의, 컨설팅, 기술(공연, 디자인, 수리/제작 등)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원 유형은 2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주민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꼭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상의 단위인 '타임달러'로 서로의 자원을 호혜적으로 교환하는 타임뱅크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단위가 다른 주민자원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실물경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환산이 필요합니다. 무급가사노동을 가치평가할 때 적용하는 'UN 가계생산 작성지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 연구도 UN의 지침 중 '전문가대체법'을 적용했습니다. 주민자원 세분류별로 가장 유사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중가와 시중가 이하 예시금액을 조사해서 델파이조 사 응답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환산금액의 평균으로 주민자원의 가치환산 기준액을 도출했습니다. 공익활동과 밀접한 자원활동으로 예를 들면, 시중가는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시, 시중가 이하는 서울시 자치회관 자원봉사 주간활동비인 2,500원/시를 예시금액을 제시했고, 응답금액의 평균값은 6,638원/시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2013~2017년 동안 강북구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사업 44건을 대 상으로 주민자원이 얼마나 쓰였는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주요한 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습니다. 첫째, 44건의 사업에서 총 2,357건의 주민자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자원활동은 사업당 평균 1,888시간에 달했습니다. 둘째, 자원 유형 중에서는 자원활동이 56.2%로 가장 많았고, 환산 가치는 사업당 평균 1,253만원이었습니다. 셋째, 제공자별로 비교해보면 1인당 제공량은 대표제안자가 일반참여자의 약 6배이지만, 총량은 일반참여자가 대표제안자의 2배에 달했습니다. 대표제안자의 헌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참여자 다수가 절반 이상의 주민자원을 제공하는 건강한 구조(롱테일 현상)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단계별로는 사업 규모, 난이도,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주민자원의 투입도 상응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섯째, 사업당 평균 주민자원 가치환산액은 2,434만원으로 평균 보조금 액수인 1,139만원의 2.1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주민자원까지 포함한다면,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은 결코 의존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사업성과로 인정, 자부담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보조금 없이도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나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것이 델파이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책적 촉진 방안은 실효성 있는 유인 효과를 갖되, 마을공동체 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거나 사익 추구로 흐를 위험성을 주의할 것, 주민자원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엄격함과 수고로움은 그 결과로 주민들에게 얻게 되는 효용과 대등하도록 설계할 것 등이 정책 개선의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제 연구의 부족한 점과 더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토론하고, 주 민자원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정책적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 길 기대합니다. [2019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실태와 촉진방안

2019.06.20

서울연구원

안현찬 부연구위원, 조윤정 연구원





비현금 주민 자원이란?









비현금 주민 자원이란?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사회적 가치가 있는 비현금 자원의 경제적 가치 인정과 활용 사례 활발







[타임뱅크]

-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적립해 다른 서비스를 제 공받는 지역 단위 교환시스템
- 1986년 미국에서 Edgar Cahn이 시작
-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제공 1시간은 1 타임달러(Coproduction 원칙)
-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1,000건 이상 운영 중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NMF)]

- 마을활동에 쓰인 주민 시간, 재능, 현물, 현금 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1989년 시애틀시에서 시작, 현재 미네소타, 벤쿠버 등 북미 주요 도시로 확대
- 지원 결과 매년 보조금보다 주민 자원이 더 많 아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1999 년 케네디스쿨 혁신상 수상)

[노원구 디지털 지역화폐 NW]

- 2017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1NW=1원)
- 시간, 재능, 현물에 디지털화폐를 제공해 자원 봉사, 기부, 자원순환을 촉진
- 지역 공공시설, 일반 가게에서 이용 가능
- 6월 기준 가입자 5,403명, 발행액 6,500만 NW, 가맹점 수 309개소 등

9

비현금 주민자원 유형 설정



● 서울시 사업에 적합한 비현금 자원을 3개 유형, 14개 종류로 설정



구분		비현금 자원	출처				
자원 활동	마을강좌	마을강좌 마을공동체 사업에 따른 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석한 활동					
	회의	기획회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 에 참석하고 아이디어 제안	사례(NMF)/ 서울시사업 분석				
	홍보	SNS, 전화,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 참여	사례조사(NMF)				
	실무	축제 준비, 벽화그리기, 장보기, 차량 운전, 유아 돌봄 등 마을공동 체 활동 진행을 위한 다양한 실무 수행	사례조사(all)				
	행정업무	정업무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공간운영	공동체공간의 관리 운영에 자원봉사로 참여 (유급운영자 제외. 단, 유급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포함)	간담회/ 서울시사업 분석				
	강의	교육, 사례발표, 강습 등	사례조사/간담회				
재능	컨설팅	법률자문, 갈등조정, 회계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	사례조사				
	기술	촬영, 디자인, 연주, 수리, 제작 등	사례조사				
	공간	회의, 교육, 행사 등에 무료로 이용한 실내외 공간	간담회				
	차량	물품구입, 물품 운반 등 사업운영 시 사용한 시간	간담회				
현물	물품(대여)	주방도구, 공구, 자동차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무료로 대여한 물품	사례조사 (NMF/타임뱅크)				
	물품(기부)	식재료, 옷, 책, 전자제품 등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사례조사(NW)				
	식음료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제공된 식음료	간담회				

경제적 가치 환산 기준 설정



● 시장대체비용법을 참고해 '유사한 시중가격'을 1차 기준으로 설정

- 국내외 유사 사례들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
- 통계청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2018): UN 가계생산 작성지침에 따라 시장대체비용법 중 전문가대체법 채택
- 노원 NW, 마치즈쿠리 포인트 제도 등 시중가격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도 델파이조사 예시에 반영



[예시1: 노	-원지역화폐]	
항목		발행 기준(1NW=1원)
자원봉사	1시간=700NW	- 행안부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는 활동
기부금품	기부액의 10%	- 지정기관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
품(재능)	1시간=700NW	- 돌봄, 배움지도, 수리, 제작, 미용 등의 서비스
묵포거래	식거래가	_ 시푸 이르 자하드 히워 가 시리 거래하 무푸

[예시2: 마치즈쿠리 포인트제도]

발행 대상자 스태프 기획,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 협력자/ 행사 당일에만 단원봉사자 관여하는 사람		포인트 발행 기준(1p=1엔)			
	TIEL COMM	1,000p/사업	연간 활동일수 24일 이상의 사업		
스태프		500p/사업	연간 활동일수 12일-23일의 사업		
	선어에는 사람	40p/1회	연간 활동일수 12일 미만의 사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0p/1회	6시간 이상		
		40p/1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시전공시시	판매이는 사님	500p/H업 40p/1회 60p/1회 40p/1회 20p/1회 20p/1회 10p/1회 3p/1회	3시간 미만		
	2121 - 0.21	20p/1회	6시간 이상		
elata)	강좌, 축제,	10p/1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참가자	이벤트 등에 참가하는 사람	3p/1회	3시간 미만		
	심기에는 시점	1p/1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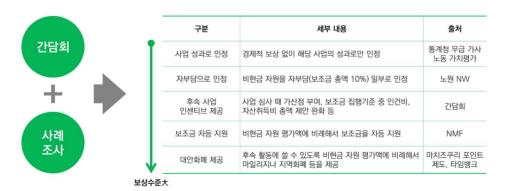
11

정책적 지원 방안 설정



● 보상 수준에 따라 정책적 지원 방안을 5단계로 설정

- 간담회,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시 마을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5단계로 구상
 - 보상 단위: 비현금 자원을 투입한 개인이 아닌 사업 참여 모임(공동체) 단위로 설정(사익 추구 예방)
 - 보상 수준 : 마을공동체 활동에 재사용 여부, 재사용의 재량권에 따라 단계 구분(실질화폐 보상은 제외)
 -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되 대가성 추구, 재정부담 심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델파이조사(1차) 개요

- 조사 기간: 2018.10.30~2018.11.23
- 조사 대상: 전문가, 공무원, 마을활동가, 마을사업 참여 주민 등 총 100명(응답률 97.0%)
- 조사 방법: 전화로 응답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 조사
- 조사 내용: 비현금 주민자원에 대한 인식, 인정 가능한 자원의 기준과 종류, 평가 및 지원 방안 등

구분	응답자 (명,%)		경력 (년)	비고			
주민(사업참여자)	23 23.7		5.61	대표제안자 DB에서 자치구 할당 표집			
공무원	32	33.0	2.81	서울시+25개 구 현재 마을부서 직원			
지원조직/활동가	발동가 31 32.0		6.48	서울시+25개 구 마을센터 직원 및 마을지원활동가			
전문가	11	11.3	9.64	관련 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실무전문가 등			
전체(합계/평균)	97	100.0	5.42	※ 여성(66.0%), 40대(53.6%)가 다수			



13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비현금 자원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

- 비현금 자원의 중요성 : 87.6%가 긍정적, 부정적인 응답은 공무원이 15.6%로 가장 높아
 - 정책적 지원 필요성: 85.6%가 긍정적, 부정적인 응답은 공무원이 25.0%로 가장 높아
 - 부정적인 응답은 '마을공동체의 순수성 훼손'(62.5%), 기타 의견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100.0%)가 가장 많아
 - 비현금 자원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

[마을활동에서 비현금 자원의 중요성 인식]

전체 87.6 7.2 5.2 주민 91.3 4.3 4.3 공무원 75.0 15.6 9.4 활동가 93.5 \$.29.4 전문가 100.0

[비현금 자원 활용의 정책적 촉진 필요성 인식]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인정 가능한 자원의 종류는 시간(자원활동), 재능, 현물에 대체로 동의

- 자원의 유형: NMF, 타임뱅크, 노원 NW 등 국내외 유사 사례를 종합해 시간, 재능, 현물로 구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71.7%), '수정 필요'(21.6%), '부적합'(7.2%) 순
- 수정 의견(19명): "시간과 재능을 통합"(타임뱅크 방식)이 가장 많아(4명/21.9%)
- 부적합 의견(7명): 자원 유형 구분이 아닌 정책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이 대다수

[국내외 유사 사례의 자원 유형 비교]

타임뱅크

(시간으로 환산)

△ (서비스 제공용)

구분

시간

재능

현물



[비현금 자원의 유형 : 시간, 재능, 현물]

7.2

21.6

21.7

27.3

100%

15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세부 종류 모두 70% 내외로 정책적 인정 동의율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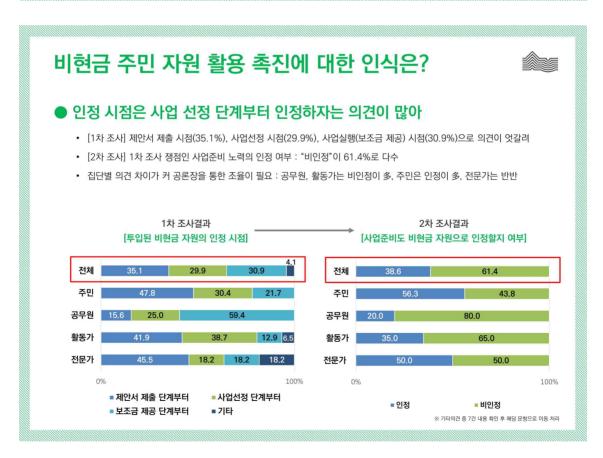
- 간담회, 사례연구, 서울시 사업 분석을 통해 비현금 자원의 종류를 12개로 세분화(자원활동 5, 재능 3, 현물 4)
 - 자원전체 평균 인정 동의율은 전문가(92.4%) \rangle 활동가(83.9%) \rangle 주민(78.6%) \rangle 공무원(74.7%) 순
 - 기술(91.8%), 실무(88.7%), 공간운영(87.6%), 강의(86.6%) 등 전문성이 있거나 임금노동에 가까울수록 동의율이 높아

[비현금 자원의 세부 종류에 따른 정책적 인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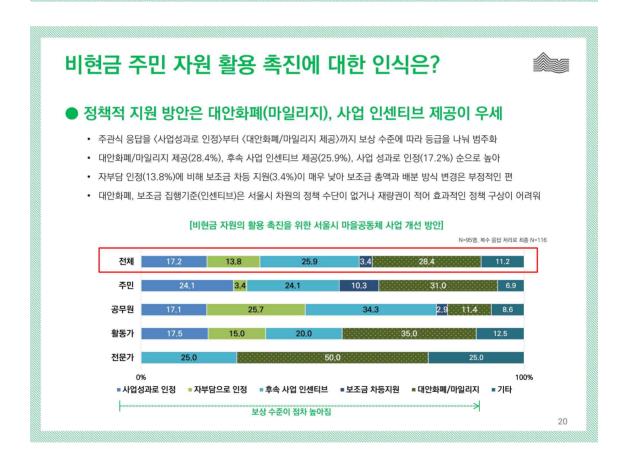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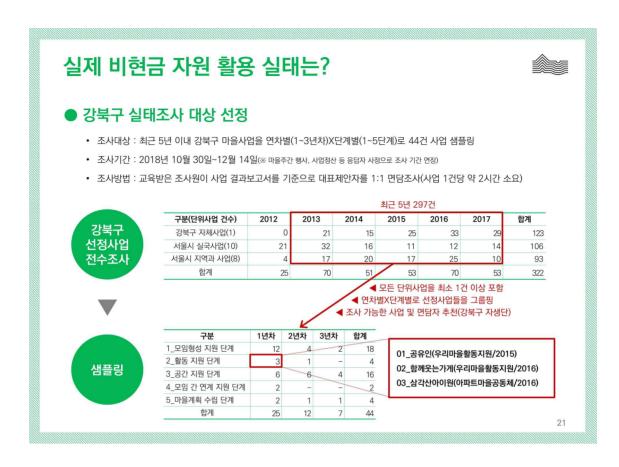
■ 인정 ■ 비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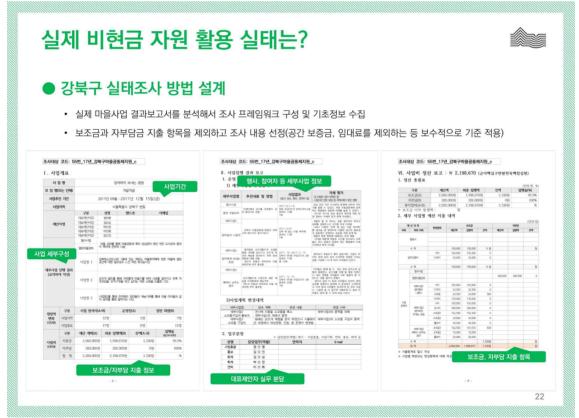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인정 방법은 객관적이고 상세한 기준에 따른 확인을 선호 • [1차 조사] 확인 절차 마련의 우선 원칙 : 객관성 40.2%, 자율성 28.9%, 간결성 27.8% • [2차 조사] 확인 절차 세부방안: "객관적이고 상세한 인정기준 도입"이 64.9%로 과반수 이상 • 주민, 공무원은 "인정기준을 최소화하고 심사나 컨설팅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40% 이상으로 적지 않아 1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 [비현금 자원 투입의 확인 절차 세부방안] [비현금 자원 투입의 확인 절차 마련 시 우선 원칙] 전체 64.9 전체 28.9 40.2 27.8 3.1 주민 주민 56.3 공무워 공무원 6.3 확동가 활동가 전문가 전문가 0% 100% ■ 갠과전이고 산세하 인정기주 도인 ■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확인 보장 ■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인 방법 마련 ■ 인정기준은 최소화하고 심사나 컨설팅으로 결정 ■확인 절차와 업무 간소화 ■기타 17



비현금 주민 자원 활용 촉진에 대한 인식은? ● 가치 환산 기준은 시중가격 또는 그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 많아 • 비현금 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71.1%가 긍정적 • 부정적 의견(22명)은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순수성 훼손"(40.9%), "환산 기준 설정의 어려움"(36.4%)이 많아 • 가치 환산 기준은 "유사한 시중 가격에 가깝게"(43.7%), "시중가격보다 낮게"(36.6%)가 많아 • 실태조사 결과에 자원 유형별 환산 가격을 시뮬레이션한 후 2차 델파이조사로 의견 재수렴 예정 [비현금 자원 평가를 위한 경제적 가치 환산 동의 여부] [경제적 가치 환산의 적정 기준] 전체 71.1 23.7 5.2 전체 43.7 36.6 7.0 4.2 주민 주민 13.0 8.7 52.6 공무원 공무원 42.1 활동가 활동가 전문가 0% 100% ■동의 ■비동의 ■기타 ■ 시중가격에 가깝게 ■ 시중가격보다 낮게 ■ 시중가격보다 높게 ■ 마을활동 기준 별도 마련 ■ 단일 기준(시간) 적용 ■ 기타 *N=74명: 경제적 가치 환산(문10)에 '부동의' 응답자 23명, 잘 모르겠음 1명, 응답부적절 2명 제외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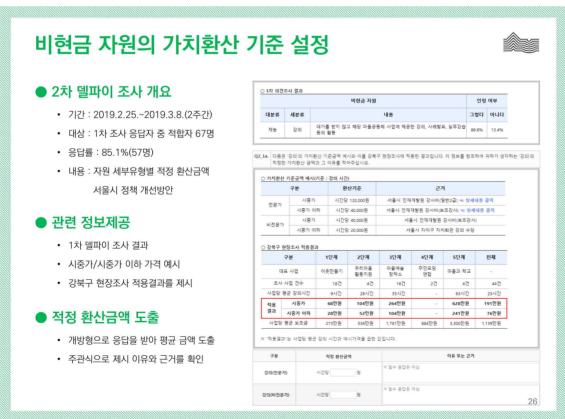




실제 비현금 자원 활용 실태는? ● 강북구 실태조사 방법 설계 비현금 속성 정보 사업 세분회 자원 종류 • 사업의 세부 구성을 일반화 • 델파이조사 결과 반영 • 자원 활용 실태와 평가를 위한 정보 • 사업 외부에 비현금 자원 기여 포함 • 자부담 외 추가 현금 지출 포함 • 경제적 가치 환산 기준은 추후 적용 마읔강좌 세부내용 상세 정보 기술 사업준비 대표제안자 의무활동 호보 제공자 수 일반참여자 자원활동 사업전반 실무 그 외(외부자) 사업운영 행정업무 평균 회차 /물품 개수(물품 기부) 공간운영 사업정리 강의 투입량 평균 시간 재능 컨설팅 세부사업 특정 사업 전문가 여부(재능) 기술 금액 시세(현물, 현금) 공간 차량 현물 물품(대여/기부) 식음료 현금(자부담 외 지출) 23

실제 비현금 자원 활용 실태는? ● 비현금 주민자원 유형과 실태조사 예시 사업준비(), 의무활동(), 사업운영(), 사업정리(사업진행 단계 정보 사업진행 세부사업 명: 음악교육 단계 세부사업(√) 세부활동 내용: 수강생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매듭파티 평균 인원 수(명)/단체 수(개) 평균 회차 (일) 평균 시간 (시) 비현금 자원 세부 내용 일반 참여자 외부자 (단체) 여부 (O/X) CHT 비현금 자원 종류 매듭파티 무대구성, 공연 기획 등 기획회의 홍보 인터넷, SNS에 홍보 · 식계정, 개인별 카톡에 웹자보 올림 자원활동 실무 싸롱드비에 무대 꾸미기, 장바야동 및 설치 행정업무 회계처리 보조금 지출 회계처리, 영수증 정리 등 0 0 공간운영 었음 강의 컨설팅 없음 웹자보 디자인 음악교육 온라인 홍보물 디자인 기술 싸롱드비 무료 대관 0 15 씨롱드비 운영자가 수강생이어서 무료 대관 차량 매듭 파티 준비물 구입 마이크 스피커, 음향기기 동 100 수유리 콜라보 보유 기기 사용 물품(대여) 0 현물 물품(기부) 없음 음식, 음료를 참가자들이 각자 가져옴 (1인당 2만원 상당) 식음료 포트람 파티 0 현금(자부담 외 지출) 현수막, 포스터 15 단체 회비에서 사용 기타사항 읍향기기 대여비, 전문밴드 공연비는 시세를 금액에 적읍





비현금 자원의 가치환산 기준 설정



● 비현금 주민자원 세부유형별 가치환산 기준금액

- 시중가격 대비 비율 : 최소 42.7%(물품기부 중가), 최대 145.2%(퍼실리테이팅 비전문가)
- 자원 유형별로 시중가격 대비 비율이 제각각이여서 평균 비율을 발견하긴 어려워
- 과대/과소평가를 우려해 높은 가격은 낮추고, 낮은 가격은 높이는 조정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

자원활동비/시간

회의, 실무, 홍보, 행정업무, 공간운영 등 시중가(`17년 최저임금) 대비 102.6%

시중가 대비 102.0% 트럭은 22,606원/시간(시중가 92.3%) 99,167원

강의비/시간(전문가)

시중가 대비 82.6% 비전문가는 46,800원/시(시중가 117%)

행사장소(소) 대관비/시간

이용 규모 : 20명 이하 시중가 대비 102.9% 행사장소(대)는 87,604원/시간(시중가 58.4%) 250,370원

공연비/건(전문가)

시중가 대비 62.6% 비전문가는 112,944원/건(시중가 94,1%)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40~120만 원대 시중가 대비 70.4% 물품(고가)는 117,262원/건(시중가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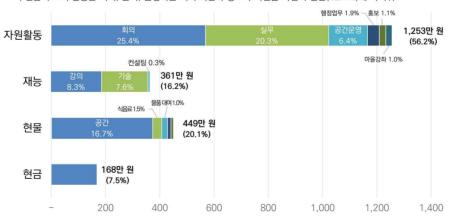
27

강북구 비현금 자원의 가치환산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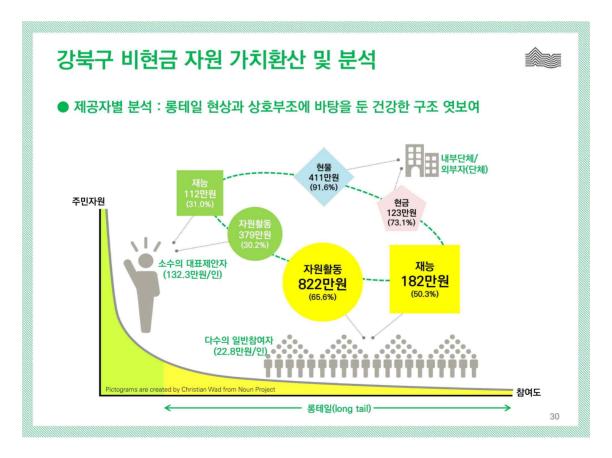


● 자원 유형별 분석: 자원활동이 절반 이상, 현물 중에선 공간대관이 대부분

- 대분류: 자원활동(56.2%) 〉 현물(20.1%) 〉 재능(16.2%), 현금(7.5%) 순
- 중분류: 회의(25.4%) 〉 실무(20.3%) 〉 공간대관(16.7%) 〉 강의(8.3%) 순
- 자원활동 : 회의(25.4%), 실무(20.3%), 공간운영(6.4%), 행정업무(1.9%), 홍보(1.1%) 순
- 주민들이 모여 활동을 기획, 준비, 운영하는 회의 시간과 장소가 비현금 자원의 절반(42.1%)에 가까워



강북구 비현금 자원 가치환산 및 분석 ● 제공자별 분석 : 총량은 일반참여자가, 1인당 평균은 대표자가 많아 • 사업당 평균 비교 : 일반제안자(47.0%)가 대표제안자(23.7%)의 약 2배 • 부족한 공간(294만원)과 현금(96만원)은 내부단체, 재능(63만원)과 대여물품(16만원)은 외부자(단체)에서 조달 • 1인당 평균 비교: 대표제안자(132만원)가 일반참여자(23만원)의 5.8배 • 대표제안자는 일반참여자에 비해 행정업무, 컨설팅, 현물대여(공간,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아(4~50배) 제공자별 사업당 평균 환산액 제공자 1인당 환산액 대표제안자: 일반참여자 = 1:1.98 대표제안자: 일반참여자 = 5.8:1 1,048만 원 (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132만 원 1,200 182 13 529만 원 800 100 414만 원 (23.7%)(18.5%)240만 원 112 400 _ 25 (10.8%)23만 원 63 53 대표제안자 일반참여자 내부 단체 외부자(단체) 대표제안지 익반찬여지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 ■ 자원활동 ■ 재능 ■ 현물 ■ 현금 29



강북구 비현금 자원 가치환산 및 분석 ● 사업 진행단계별 분석: 주민 자원의 91.1%가 본 사업에서 쓰여 진했단계별 투입량: 세부사업(73,3%) › 사업운영(16,0%) › 사업준비(6,7%) › 의무활동(2,2%) › 사업정리(1,8%) 순 • 사업준비와 의무활동은 9.1%, 본 사업(사업운영+세부사업+사업정리)은 91.1% 차지 • 사업준비는 회의(48.3%)와 실무(29.6%)가, 의무활동은 마을강좌(45.5%)와 회의(22.0%) 비중이 높아 사업준비(A) 117 149만 원 (6.7%) 의무활동(B) 50만 원 (2.2%) 사업운영 299 357만 원 (16.0%) 세부사업 761 392 134 1,636만 원 (73.3%) 사업정리 40만 원 (1.8%) 168 2,232만 원 (100%) 전체-(A+B) 152 2,033만 원 (91.1%) 1 000 2 000 500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 31



강북구 비현금 자원 가치환산 및 분석



● 사업 단계별 분석: 단계가 높아지면 비현금 자원 투입도 늘어

- 단계별 환산총액: 5단계(10.688만원) > 3단계(2.388만원) > 2단계(931만원) > 4단계(911만원) > 1단계(648만원)
- 사업의 규모, 난이도,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비현금 자원의 투입도 늘어
- 단계별로 가장 많이 투입된 비현금 자원의 종류는 참여자 규모, 보조금 지출 제한에 따라 달라져

1~2단계: 재능, 현물多 소모임의 강의, 교육, 행사장소 를 보조금보다는 주민이 조달 3단계: 현금 多 보조금 지출이 제한된 시설조 성, 자산취득 비용을 주민이 보 충

4~5단계: 자원활동 多 참여자 규모가 크고, 참여형 계 획 수립이 주된 활동

										Control of the Contro		
구분	1단계		2단	계	35	계	4단계		5단	·계	전체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자원활동	335	51.6	408	43.9	1,210	50.7	601	66.0	6,730	63.0	1,253	56.2
재능	128	19.8	268	28.8	386	16.2	109	12.0	1,531	14.3	361	16.2
현물	165	25.5	236	25.3	444	18.6	192	21.1	2,082	19.5	449	20.1
현금	20	3.2	19	2.0	348	14.6	9	1.0	345	3.2	168	7.5
총합계	649	100.0	931	100.0	2,388	100.0	911	100.0	10,688	100.0	2,232	100.0

33

강북구 비현금 자원 가치환산 및 분석



● 비현금 자원은 사업당 평균 보조금의 1.8배, 보조금 의존도 심화라는 비판 제고 필요

- 사업당 평균 보조금 대비 비현금 주민자원은 1.9배, 현금 포함 시 2.1배
- 델파이 조사에서 인정 동의율이 낮았던 사업준비+의무활동(8.9%)를 제외해도 1.78배 수준
- 단계별로도 비현금 주민자원이 보조금 대비 최소 1.15배에서 최대 3.13배까지 많아
- 현금 자부담 기준으로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기존 비판은 제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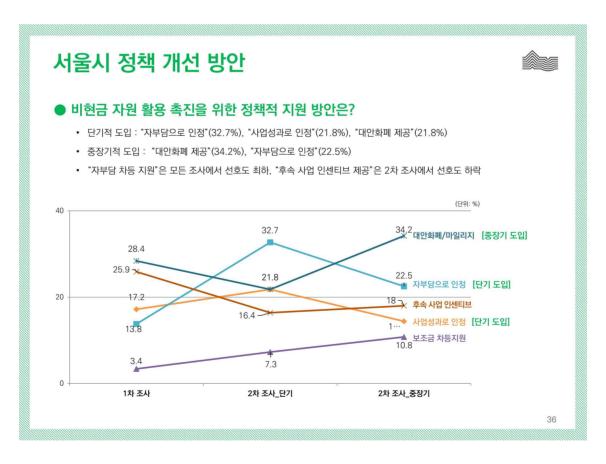
1,139만원 : 2,43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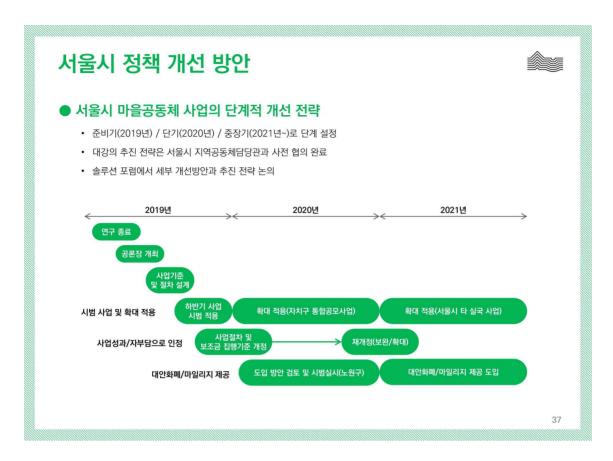
사업당 평균 보조금

사업당 평균 주민자원 가치환산액

	구분				1단	년계	2단	!계	3단	계	4단	<u>·</u> 계	55	년계	전체	테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보조금			273	100	536	100	1,781	100	684	100	3,300	100	1,139	100		
주민자	민자원		670	245	950	177	2,736	154	920	135	11,033	334	2,434	211		
	비현	년금 자원	629	230	912	170	2,040	115	902	132	10,343	313	2,063	181		
	an	자부담 외	20	7	19	4	348	20	9	1	345	10	168	15		
	현금	자부담	34	12	62	12	481	27	52	8	62	2	203	18		

서울시 정책 개선 방안 ● 비현금 주민자원 인정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 • 인정 시점: 제안서가 선정된 시점부터(선정 이전의 제안서 준비, 심사 등에 투입된 자원은 미인정) • 사후 확인형보다는 사전 계획형 : 주민자원 활용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안서에 담아 제출 • 심사 및 평가 기준 : 가급적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유형별 표준가격을 설정(보편적 기준 적용) •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선호해 행정 절차와 업무 증가 우려(향후 공론장 개최 필요) 사업안내 주민제안 심사/선정 현약체결 결과보고 사업 실행 (설명회/상담) (모임/단체) (보조금 지원) (보조금 정산) (주민참여심사) 1차 조사 격과(누전) 35.5% 65.4% 96.3% [비현금 자원 인정 시점] 2차 조사 결과 사업준비 인정 반대 61.4%% 의무활동 인정 반대 52.6% 보완/확정 (컨설팅) 사전제안 [비현금 자원 인정 절차] 심사 사전 계획형 56.1% 사후 확인형 43.9% 객관적/상세한 기준 64.9% 유형별 표준금액 적용 71.9% 객관성 40.2% 자율성 28.9% 가소화 27 8% 35







토론1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 보상이란?

김의욱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 문제의식

이번 논의의 주제는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시민들의 기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화폐방 식으로 주민들이 제공하는 비현금적 자원제공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제도화를 추 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가진 다충적인 작동수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특정 한 국면의 이슈로 인해, 제도화가 추구하는 목표,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

- 일반적인 토대의 층위로 공동체적 결속의 중요성/시민사회가치, 경제적 불평등/ 경쟁심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 90년대 이후 정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의 활용/민영화를 통한 비영리 영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보조금 사업, 참여예산, 정부 부서별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사업기조가 있다.
-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이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주민참여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개선안을 개발하는 것

그런데 제도화는 단지 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제반의 여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층위를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거나,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층위의 구분이 보다 세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토론이 필요한 것들

1) 토론의 주제로 제시된 사회적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투입요소에 대한 평가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되는 성과, 혹은 효과에 대한 평가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모형이 투입요소에 대한 평가, 사업의 실행, 그리고 곧바로 결과보고와 정산이라는 전형적인 보조금 사업을 설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보상의 단계가 곧바로 연결된다면 이는 투입요소에 대한 사후 비용지급이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자원의 투입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유, 무형으로 주민들이 마음을 내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투입요소에 대해 반대급부로서의 보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따라서 투입요소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성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2) 모든 주민들의 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인정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비경제로 구분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는 매우 다양한 경제방식이 있는데, 즉 시장의 화폐경제만이 아니라, 생활을 포괄할 때 다양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적 인정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는 위계를 가지고 있다.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경제의 욕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본다. 그 기본위에서 다른 욕구가 점차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먹고사는 경제욕구를 결정론으로 삼는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각각의 욕구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글래서는 개별 욕구의 체계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았다. 즉 생존경제가 모든 것의 토대가 아니며, 각각의 욕구는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과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도 각각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어야 한다. 명예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반면 생계를 위한 수입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정이 주는 표창장은 무용지물이다.

3) 다양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를 브랜딩 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인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즉 주민참여의 당위와 공공성의 가치와 같은 직접적인 기능과 효과를 말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말하는 것은 상품의 매력을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동기화의 매력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인정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 포괄적인 제도화의 방향으로 적합하다.

- 4) 보상의 방식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체가 정부가 되고, 정부의 재원으로 대안화 폐나 마일리지가 제공된다면, 이는 정부의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마을공동체의 풍토와 문화형성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보상의 개념은 경제를 시장의 방식에 의한 경제로 환원시키는 위험이 있다. 정부영역에 의한 공적경제, 기업에 의한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적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가 각각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화폐단위로 환산되는 투입요소에 대한 측정과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이에 맞게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회적 경제로서, 지역공동체의 생활로서 경제가 표현되고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 5) 활동의 지속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과 구분되어야 한다. 실비지급은 보상이 아니라, 활동의 지속과 재생산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 활동비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청년이나,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변형된 보상의 방식이 아니라, 활동의 유지를 위한 비용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덧붙여서 마을의 주민참여 인프라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 활동가 시스템을 안정 화하고, 이를 위한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6) 보상의 방식이 사업이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강화에 기여하는 보상의 기준과 작동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공정성, 보편성, 개방성, 사업성과의 측정, 보상의 적절한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비영리경제, 생활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방안을 통해서 보상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타임뱅크와 같은 주민주도의 호혜적 보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Memo

토론2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김현아 | LAB2050 연구원

0. 들어가며

"주중에는 동료들과 활동하고,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알바해요."

몇 해 전,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20대 여성들이 자신들이 만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모금은 어떻게 하는지 자문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다가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디지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젠더폭력 이슈였다. 기존 의제만으로도 과중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또 다른 이슈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새로운 주체가 생겨난 것이 신기하고 반가웠다.

이 활동가들을 몇 차례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이들이 가진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운동 방식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구하되 결국 자신들만의 판단과 실천 방식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이 기성세대가 구축한 운동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안정적인 활동비로 생계의 어려움은 없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는 덜했을 것이다.

지난 포럼에서 김병권 협치자문관은 시민사회 조직들이 전문가 의존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영역을 기반으로 조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후원회원에 머물러있는 시민들이 활동회원으로 바뀌고, 풀뿌리 조직과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더 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는 거기에 더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시민'에게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비영리스타트업을 준비하는 20-30대들, 온라인 활동커뮤니티들, 1인 독립활동가 등 새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이런 흐름을 매우궁정적으로 생각한다. 시민사회 생태계의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들이 생계노동에 쓰는 시간을 줄여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거나, 자기 삶의 방식을 성찰하거나,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수당, 참여소득, 기본소득이 제안되어왔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결정 또는 검토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참여소득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 당위는 농업이 단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공익,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인정'이 담긴 것이다. 나는 오늘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의 한 방식으로서 참여소득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바랬는데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1. 현행 공익활동 지원 방식의 한계

1) '등록 단체' 중심의 공익활동 지원과 진입장벽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사회발 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로버트 퍼트넘은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으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을 설명한다. 시민 들이 더 많이 비영리조직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호혜성의 규범이 형성되고, 지역 사회 현안이나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증가함으로서 참여가 촉진된 다는 것이다(Putnam, 2000).

사회자본이론은 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조직을 지원해야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등록된 단체들은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조세혜택, 보조금 지급, 보조금성 경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회비 또는 모금을 통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로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단체'가 되어야만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주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기 위한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 비영리 법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수 천 만원의 자산조건을 충족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비영리스타트업,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1인 독립활동가, 느슨한 액션 그룹의 공익활동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2) 사업비로 한정한 지원방식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업비를 주는 보조금 방식이다. 매년 정부부처나 지자체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많은 단체가 응하고 그중에서 일부만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사회서비스와 인식 개선 교육 등에 관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공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업비만 지급하는 방식은 비영리조직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활동가)'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사회적경제조직은 공익,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비영리조직들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는 1~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최근 임팩트 투자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는 소셜벤처들의 경우도 투자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인다. 비영리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로만 한정한 것은 공익활동 활성화의 제약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2.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1) 대안적 미래 노동으로서 '시민노동'과 '시민수당' - 울리히 벡

'참여소득'보다 앞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위험사회'로 잘 알려진 울리히 벡(2000)의 '시민수당' 개념이다. 그는 더 이상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임노동 관계만 노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21세기의 노동으로 인정하는 '시민노동 모델'을 제안했다. 벡은 '시민노동'을 "시장노동 이외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화된 시민들의 결속을 조성하는 대안적 생활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모델은 전일제 취업노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하는 것으로, 누구든 총 노동시간의 일부는 시장노동에 또 일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그리고 '시민노동'에 대한 대가로 '시민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사회적 인정과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0).

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개인들의 등장을 강조한 점도 '시민수당'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새로운 사회 위험들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스스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개별화된 시민들'의 증가를 전망했다. 종합하면, 새로운 주체인 성찰적 개인들이 시민민주주의를 위하는 활동을 보상하는 개념으로서 제안된 '시민수당'은 최근 우리사회에 등장하는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각성한 개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하다.

2)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에 대한 보상, 참여소득 - 앳킨슨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은 사회적 기여 활동에 대해 급여혜택을 주는 참여소득을 제안했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일과 동일하게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여를 하는 모든 성인(16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생산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면서일하거나 자영업을 함으로써, 혹은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를 돌봄으로써,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창출하는 기여를 모두 포함한다.

앳킨슨은 참여소득의 기여의 개념을 활동의 범위를 고려해 확장 가능하다 보았으며, 사회적 인정의 방식은 21세기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들이 예컨대주당 35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을 조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소득(PT)에서 국민연금을 뺀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그의 참여소득 모델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주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시민으로 하여금 시장노동에 쏟는 많은 시간 중 일부를 철회하고 그시간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시장노동(돌봄,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늘려줄 것이라고 본다(가이 스탠딩, 2018).

하지만 앳킨슨은 기본소득의 시민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순수 하게 여가를 즐기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사회적 '호혜성'에 기반하고 있는 참여소득이 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지지받기 더 용이하다고 보았다.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참여소득은 '기여'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五]	기보소드	/ 찬여소드	/ 시민수당의	차이
اعتدا	7125	1 4 41	<i>1</i> 기단도중의	\sim_{Γ}

	경제적 가치 영역		사회적 가치 영역		기여 없음	
참여소득	임금노동	자영업	교육, 훈련, 구직활동	돌봄 (부불노동)	공익활동 (단체 참여,봉사)	여가
시민수당					시민노동	
기본소득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무조건 지급					

한국에서 참여소득이 도입된다면 시민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매달 50만 원의 참여소득이 지급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시민사회 각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참여소득은 다수 시민에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줄 것이다.

둘째, 새로 조직을 만들거나 초기 운영 단계에 있는 시민, 독립활동가들의 경우, 재정 기반을 다질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기존 단체들의 경우에는 '회원의 회비' 뿐 만 아니라 '회원의 시간'을 늘려 활동의 폭과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체 상근활동가들의 삶의 안정성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다. 적은 활동비로 할 수 없었던 저축, 노후 준비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 을 조금은 덜어 줄 것이다.

3. 결론

나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면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과연 시장노동 시간을 줄일 지, 만일 시장노동을 줄여 재량시간이 생긴다면 그것을 공익 활동에 쓸 지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연구자 Fizpatrick(2000)도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옹호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수단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정책들과 병행되어야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본소득이 참여효과를 가져

올 지는 검증하는 정책실험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단계적으로 참여소득을 우선 도입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제도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도입은 그런 경로로 볼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이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조직화된 시민'이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조직화 '될' 또는 조직화 '할'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가이스탠딩, 2018,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안효상 옮김, 창비

김정욱 · 진성만, 2018,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연구 : 중간지원조 직을 통한 공익활동지원으로부터의 함의", (사)경인행정학회·(사)전환기행정학회·신한대지역사회개발연구소 공동동계학술대회, pp.25-40

김병권, 2019, "시민사회지형 변화에 따른 쟁점과 도전 :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조직 발전 방안", 서울시NPO지원센터 강한시민사회포럼 발제문

울리히 벡, 2000,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 (주) 생각의 나무

앤서니 B.앳킨슨, 2015,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Fitzpatrick, T, 2009, "Basic Income, Post-productivism and Liveralism" Basic Income Studies, Vol.4, No.2, pp.1-11.

Robert Putnam,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pp.35~42

Juliet Schor,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1992)

토론3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지원 및 제도 · 정책 방향

정란아 │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1. 시민사회지원의 기본방향

1) 시민사회의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정

※ '시민사회활성화'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고 공적문제에 참 여하는 시민이 많아지며, 시민주도의 창의적인 실험과 시도의 기회가 늘어나 는 것

2) 관리/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공모/계약 방식의 지원에서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전환

- 과도한 행정규제는 오히려 행정처리 역량이 부족한 작은 단체 지원이 불가 능한 환경 조성
- 활동가의 공적 활동 참여에 대한 존중 필요

3) 시민참여,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생태계 조성 지원

- 시민운동 30년의 기록 및 사회적 성과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 지원
- 단체 활동의 다양한 참여/유입 경로 활성화 지원
- 권한위임을 통한 사회적가치 공동생산자로서의 파트너십 강화

2. 공익활동/활동가의 사회성과에 대한 제도적 인정 방안

1) 제도개선의 필요성

- □ 사회문제해결에 공적자원의 투입이 어색하지 않은 활동의 등장
 - 조직운동과 공익활동을 구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운동의 확대
 - 공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주민운동, 도시재생운동 등의 확장
 - 비영리영역을 시장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등장
- □ 작은 단체,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 지원
 - 회원의 회비 및 기부에 의존한 재정구조 지속가능한가?
 - 조직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의 확장
 - 활동가의 전문성 기반 참여 기회 확대
 -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구조의 취약성 극복 필요

< 서울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경향성 (433개 단체 조사)>2)

경향성	주요 설문분석 내용		
활동주제와 방식의 다양성 증대	- 1990년대 이후 복지, 인권, 보건, 자원봉사 분야가, 2000년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단체 설립 증가 - 시위·집회·항의·서명운동(11.3%) 보다는 상담·교육·인력 양성(45%)과 네트워크·협업(40.6%),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조직(39.3%) 방식이 높음 당사자 조직화(9.7%)와 온라인기반(7.2%) 활동은 아직 높지 않음.		
회원규모와 과반 정도의 회비납부 회원은 높지 않음	 - 100명 이하(21.2%)에서 1만명 초과(7/9%)로 편차가 큼 - 회원이 101-150명인 경우가 19.2%로 가장 많고, 과반 정도 (50.5%)가 회원 200명 이하임 - 전체 회원 중 회비납부 회원의 비중은 평균 42.8%이고, 37.2%에서 회비납부회원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나타남. -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은 회원규모가 201-500명 규모 단체 (38.4%)이거나 1990년-99년 사이 설립된 단체(29.6%) 		

²⁾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2018, 서울시NPO지원 센터

소규모 활동가 규모와 경력활동가 보유 낮음	 상근활동가는 2-5인이 42.0% 가장 많으며. 5인 이하가 61.2% 상근활동가가 없거나 1인인 비율 19.2% 3-7년차 중견활동가가 없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비상근활동가는 2-5인이 29.1%로 가장 많음
소규모 재정과 회비/후원금 비중 높은 편	 - 5천만원 미만이 30.5%이며 전체적으로 2억원 이하가 과반 이상 - 회비(29.8%)와 후원금(22.7%),총 53.5% 자체 확보 - 정부지원(15.9%), 민간단체지원금(8.6%)은 총 24.5%로 낮음
지출의 절반 이상이 경직성 경비	- 공익활동 사업비가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인건비(29.1%)와 운영비(28.6%)를 합한 경직성 경비가 57.7%
높은 월세임대 비중	- 98.6%가 사무 공간이 있지만 56.1%가 월세임대,

〈 상근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과제〉





2) 현행 법적 제한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경비란 단 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 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자부)	운영비의 적용범위는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 비,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기부금품모집제도 해설서 (2012,행정안전부)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 당할 수 있습니다. (예 :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 비, 사용 경비 등)

3) 개선의 방향

영국 Compact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지침

■ 제8조 비용에 대한 이해 : 재정지원 기관들은 시민사회조직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으로 확인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지원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실행〉

- 8.1 재정지원 신청서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 8.2 자원봉사자의 관리 비용의 지불 등 자원봉사 활동 관련 비용의 상화을 수용하다.
- 8.3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비용 세부항목 요청을 하는 경우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 모든 섹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제9조 정책결정 : 선정 기준은 재정지원기관이 최고의 금전의 가치를 달성하는 가장 적합한 시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행〉

- 9.1 3년 또는 그 이상의 재정지원을 실행한다. 이것이 최고의 금전의 가치를 공급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닌 경우, 정부는 다른 대안적 재정지원 방안들이 동일한 결과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9.2 재정지원의 결정은 계획된 사업 개시일보다 최소한 3개월 앞서 이뤄져야 한다. 3개월 규정을 벗어난 결정에 대한 정당화에 설명해야 한다.
- 9.3 입찰에 실패한 조직들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4) 주요 제도 개선 과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전문성 활용, 시민의 공적활동참여, 현장연구자의 연구수행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가/시민의 참여 활성화

【 개정제안사유 】

- 1.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물품이나 용역계약과 달리 해당 의제/해당 지역/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경험이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지방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투여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참여는 보장되나 사회적가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의 활동기회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례1) 서울시 관악구의 NPO활동현황 조사에 관악구에서 오랜기간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가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 (사례2) NPO에서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NPO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에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경우
- 2. 사업자등록증이 납세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현행 개인과 의 계약은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세는 3.3%로 납세의 측면 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사업자등록증은 전문성 판단의 유효한 도구가 아님
- 3. 공익활동가 혹은 공익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며, 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안임
 - (사례1)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요구
 - (사례2) 전문성이나 역량을 공익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투여하고 실비 수준의 비용을 받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요구
- 4. 최근 시민주권,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계약과정에 사업자등록증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로 시민참여의기회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 ⇒ 그러므로 경험이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대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계약의 대상을 확장하여 역량있는 시민과 공익활동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된 시행규칙의 행정안전부령에 해당하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함

□ 활동가의 경력 인정에 관한 인건비 집행기준 개정(2018년 적용)

	행안부 기준					
등급	대 상			사용한도액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특급 (전현직)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회장) - 광역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행자부 사전협의)	 대기업 총수(회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행자부 사전협의) 	300,000원	150,000원		
1급 (전현직)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업 임원(급)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체육,종교인,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10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잔현직 45급 공무원 - 잔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원	70,000원		

- □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석에 대한 관행 개선 및 기부금품법 개정
 -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범위내 모집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비용안에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음.
 - 사업비 내 기부금 분배 및 사업실행 관련한 인건비 사용 허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 사업수행비용을 분배비용, 인력비용, 기타비용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사례 참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개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은 사업비에 인적 경비가 포함됨을 규정하면 서 단체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제외하고 실비성 경비에 한정하고 있음
- 사업 수행에 있어 인적 경비는 필수적이고, 이를 외부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임·직원이 수행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는 것이 공평함. 외부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보다 단체 활동가가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을 수 있으며,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첨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책 개선 과제

목 표	과 제	개 선 방 안		
	사회적 협약 추진	지역별 협약추진 체계 구축		
	사외식 협약 구선	협약 추진 지원기구 설치		
	청년, 시니어 등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시민참여확대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 일자리 창출		
시 민삼 역약대 	시민성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납세자주권강화	소득세 1% 공익지원대상 직접지정		
		국민참여예산제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민법개정		
	비영리 관련 법제도 혁신	공익법인법개정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활성화 기반구축		비영리민간단체법 개정		
	독립적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립	국무총리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선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시민사회센서스 (국가기초통계) UN이 권고한대로 통계청, 노동부, 한국은행 등이 통계작성, 기록물 관리, 국가 리포트, 백서, 실태조사			
	시민사회 공익포털 구축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개선	지원기준 개선(사회적, 정책적 영향력)		
		국민운동단체 지원 개선		
		보조금 지침 개선		
	실효적인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민주시민교육 확산			
시민사회		국무총리실 해외연수프로그램 개선		
역량 강화	활동가 발굴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교육확대		
	시민사회활동가 공제회 설립			
	국가-시민사회-지역 협약제도 발전	중앙부처내 협치 전담 담당관		
정부-시민사회	시민사회참여 위원회제도 개선			
파트너십 증진	민간위탁제도개선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4조・제11조		
		기부금품법 전면개정		
	불합리한 기부 관련 규제 개선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증세법 개정		
기부문화		비영리법인 지원체계 구축		
환경조성	기부 활성화	공유자산 신탁제도 도입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제도		
사회적 금융	사회적가치기금 조성			
활성화	사회혁신기금 조성			